

# 「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### 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### 2. 제안이유

-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지역의 방위산업 네트워킹 및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 방산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함
-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가. 사 무 명 :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

나. 추진근거 및 필요성

1) 추진근거

가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나)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
다) 「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
라)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2) 필요성 : 네트워크 지원사업 진행 경험과 해당 분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네트워킹, 사업관리 등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 필요

다. 위탁사무 : 방위산업 네트워크 지원사업 운영·집행

1) 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

- 2) 「방산혁신기업100」컨설팅, 세미나, GDP포럼 등 지역 방산기업 경쟁력 제고
  - 3) 방산 전시회 공동참가·참관 지원 등 방산 홍보 강화 등
- 라. 위탁시설(소재지, 규모, 지원시설, 위치도 등) : 해당없음
- 마. 위탁기간 : 2026. 2. ~ 2026. 12. 31.
- 바. 소요예산(산출근거) : 180백만원(시비)

(단위 : 백만원)

계	인건비	간접비	사업비	비고
180	15	7.5	157.5	

사. 적정성 검토결과 : 적정 ※2025년 구미시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(251231)

아. 위탁구분 : 재계약 (수탁기관 : (재)구미전자정보기술원)

자. 부서의견

- 1) 구미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방산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으므로,
- 2) 2026년도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사료됨

#### 4. 참고사항

##### ○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- 「구미시 사무위탁 조례」 제4조, 제6조
- 「구미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
- 「구미전자정보기술원 관리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6조

##### ○ 예산조치 : 2026년도 예산편성

##### ○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

: 적정(2025년 구미시 반도체방산과 공공위탁 선정심의위원회 심의)

##### ○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, 감사결과

: 2025년도 성과평가 및 감사 미시행(관련 조례 2026. 1. 1. 시행)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동의안은

- 지역 방위산업의 교류·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반 업무를 공공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본 사업은 방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, 방산기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네트워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으로,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기업의 방산 전시회 참여가 단순 참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, 적극적인 참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수탁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·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